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38호
2.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
3. 발의일자 : 2019. 1. 25.
4. 회부일자 : 2019. 1. 31.

II. 폐지이유

-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그동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25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8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그동안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2000년 4월 18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 16786호로 제정되면서¹⁾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853호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1)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00. 4. 18] [대통령령 제16786호, 2000. 4. 18, 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운영하여 왔습니다.

- 한편 지난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²⁾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교육활동 분쟁의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2000년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2013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공·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³⁾

2)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5. 6] [대통령령 제24346호, 2013. 2. 5, 일부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2. 5.]

3) 참고로, 동 조례의 상위법이었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16년 8월 2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그 법령명이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자체 기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⁴⁾ 제정·운용하여 왔던바, 동 조례의 폐지는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폐지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6년여가 지나고 이미 조례와 별도의 자체기준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이 동 조례의 폐지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소관 사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겠는 바, 향후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법 적용에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교육청도 동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0, 2019. 2.1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중등교육과-12987, 2017.4.19.)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4.19. (2017.4.19. 일부 개정)

I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길잡이(교육과학기술부, 2013.2.27)

II 목적

-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조정)

III 용어 정의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
- 관련 당사자: 교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교권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학생, 보호자 등)

VI 심의(조정) 내용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가 당사자인 교권침해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 설치 및 구성

- 명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 구성

-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인 이하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함)
 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간사 및 서기 : 초·중등별로 업무담당 간사 및 서기 각 1인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 해당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짐

○ **위원장의 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전문가 소위원회** :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VI 위원회 운영

1. 심의(조정) 원칙

- 학교장 의견서 등 관련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조정)
- 심의(조정)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 등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피해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

2. 회의 운영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함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의 심의
 -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가 당사자인 교권침해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심의(조정)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조정)에 관여하지 못함
- 관련 당사자가 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정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 위원이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 등에서 회피할 수 있음

4. 출석 통보

- 통보 방법: 교육감은 관련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위원회에 제출
- 통보가 곤란한 경우: 관련 당사자의 소속기관장을 통해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위원회에 제출
- 출석통보 일시: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 출석 불응 시 처리: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의 전일 18시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

5. 심의(조정) 신청 및 기간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에 대한 심의
 - 심의 안건: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안),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
 - 신청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교권침해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신청

- 신청자: 학교장
 - 신청기한: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최종 심의 후 7일 이내
 - 신청서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사실조사서,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등
 -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공문 발송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당사자인 분쟁
- 신청자: 학교장
 - 신청기한: 분쟁 발생(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서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사실조사서,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등
 - 신청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우편 접수, 직접 접수
- 심의(조정)기간 : 심의(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심의(조정) 제외 대상 :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건

6. 결과 처리

○ 결과 통보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의결서: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
- 심의(조정)결과 통보서 수령증: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 후 위원회에 제출
- 통보 방법: 관련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을 명할 때의 방법을 준용

○ 심의(조정)결과 조치

-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함
-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조정)결과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여야 함(단,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심의(조정)결과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침해 상담 및 피해교원이 심리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상의 휴가 제도 활용을 권고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피해 교원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보를 요구할 때에는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 인사 시 우선 발령 할 수 있음

VI 기 타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교권침해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의 겸직허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관 계 법 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일부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3. 2. 5.]